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중처벌〉

-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627호)
-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634호)

2022. 5.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대 영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1. 개인정보파일 접근의 주기적 점검	3
2.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중처벌	4
※ 참고자료	8

I. 개 요

1. 제안경위

가.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27호)

- 1)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2. 1. 28.
- 3) 회부일 : 2022. 2. 3.

나. 이용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34호)

- 1)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2. 1. 28.
- 3) 회부일 : 2022. 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

최근 구청직원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제화되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73조의2 신설).

나. 이용호의원 대표발의안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150건 이상 적발됐고, 공무원이 돈을 받고 홍신소에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도 발생하였음.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인정보파일 접근의 주기적 점검

- 이종배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이종배의원안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⑥ (생략)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u>제33조부터 제38조까지</u>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u><신설></u>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u> -----. <u>제33조의2(접근기록의 점검) ①</u> <u>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재 공무원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 비해 광범위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분된 별도의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점검은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되고 있음.¹⁾

○ 이로 인해 공무원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주기적인 접근기록 점검 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중처벌

□ 각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최근 수원시 구청 직원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신변보호 가족 살인’ 이석준에 주소 넘긴 구청 공무원...개인정보 1,100건 홍신소 제공>(YTN, ‘22.1.10.) 등)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이종배의원안	이용호의원안
<신설>	제73조의2(가중처벌)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제70조 및 제71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3조의2(가중처벌)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70조 및 제71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현행 제70조 및 제71조는 개인정보 처리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의무위반 시 각각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그러나 민간과 달리 공무원은 수행업무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민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령 준수 의무와 책임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의 위법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한 국민 개인정보 이용·제공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등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각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등 이 법 제70조 및 제71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가중처벌이 관련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임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현재 제70조 및 제71조의 죄를 범할 경우 이 법에서 가장 강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각 개정안과 같이 가중처벌을 적용할 경우 「형법」 상 다른 공무원 범죄의 형량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⁴⁾

○ 참고로, 이종배의원안의 경우 제70조 및 제71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용호의원안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추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처벌 대상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향후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

4)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음.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참고자료: 「형법」 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p8)

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자료

「형법」 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죄 명	내 용	형 량
직무유기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직권남용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4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폭행, 가혹행위 (제125조)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피의사실공표 (제126조)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상비밀의 누설 (제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거방해 (제128조)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수뢰, 사전수뢰 (제129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삼자뇌물제공 (제130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죄 명	내 용	형 량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1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가능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가능
알선수뢰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뇌물공여 등 (제133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